

## 애니메이션 연구소 규정

**제 1조 (명칭)** 본 연구소의 명칭을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 2조 (목적)** 본 연구소는 애니메이션의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의 산업과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(소재지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 4조 (사업)** 본 연구소는 다음과 사업을 행한다.

1. 애니메이션의 학술적 연구
2. 국내외 관련 기술과의 학술 및 기술 교류
3. 산학협동 연구 및 교육사업
4. 학술 세미나 및 기술서 발간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**제 5조 (구성)**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소장 : 1명
2. 운영위원 : 약간 명
3. 연구원

**제 6조 (위촉)** 본 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5.09.01)

**제 7조 (소장의 직능)**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**제 8조 (운영위원회)**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 9조 (경비)**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과제 용역비와 회원사 기업체의 지원금 및 기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10조 (폐소)**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 (신설 2015.09.01)

**제11조 (보고)**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  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**제12조 (준용)**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)

**제13조 (운영세칙)**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에 정한다.(조변경, 개정 2015.09.01)

### 부 칙

**제 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 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